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8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40시간”을 “10시간”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

「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 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 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중전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검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

| 구분       | 기준  |
|----------|---|
| 1. 시설·장비 | <p>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p> <p>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p>   |
| 2. 기술인력  | <p>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常勤) 인력으로 확보할 것</p> <p>가. 시험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ol> <p>나. 시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li> </ol> |

|  |  |
|--|--|
|  | <p>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실무자 교육과 시험을 이수·합격한 사람</p> |
|--|--|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분야”란 기상, 대기, 물리 등 기상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별표 2]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

| 구분      | 내용   |
|---------|--|
| 1. 검정요원 | <p>다음 각 목의 경력(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p> <p>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p> <p>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 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p> <p>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 업무경력</p> |
| 2. 검정설비 | <p>가.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p> <p>나.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준기, 기본장비 및 현장검정을 위한 이동식 장비를 갖출 것</p>  |

비고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고 기상측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  |  |  |  |
|----------------------------|--|--|--|--|
| 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br>로 제공한 경우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를 정하고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으로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